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이 조에서 “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에게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인 피의자
2. 농아자인 피의자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
4.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③ 법률구조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피의자가 석방된 때
2. 피의자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한 때
3.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4. 제2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때

제201조의2제10항 중 “제200조의5는”을 “제200조의5제1항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포되는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이 조에서 “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에게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인 피의자 2. 농아자인 피의자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

4.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③ 법률구조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피의자가 석방된 때
- 2. 피의자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한 때
- 3.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 4. 제2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⑨ (생략)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00조의5제1항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561